

인천광역시고시 제2017-210호

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(변경 및 정정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(변경 및 정정)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

아울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7. 9. 11.

인천광역시장

■ 주요 변경 및 정정 내용

-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의 주소지(위치)를 구 지번에서 신 지번으로 변경
- 「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(변경)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(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-105호, 2015. 5. 4.)」 내용 중 착오 기재 사항 정정

1. 사업의 명칭 (변경 없음)

-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· 주소 (변경 없음)

- 명칭: 인천도시공사 사장
- 주소: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

3. 사업의 목적 및 개요

가. 사업의 목적 (변경 없음)

- 검단신도시 및 인천 지역 내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공장의 부지 확보
-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장지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·개발
- 수도권 서부지역내 중소기업을 위한 대규모의 新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인천 서북부 지역의 균형개발 도모

나. 사업개요 (변경 없음)

- 근거법률: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- 사업비: 14,038억 원
-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면 적 (㎡)	구성비 (%)	비 고
합 계	2,250,719.2	100.0	
산 업 시 설 용 지	1,381,455.0	61.3	
일 반 공 장 용 지	1,328,186.8	59.0	
임 대 공 장 용 지	17,205.6	0.7	
지 식 산 업 센 터 용 지	26,441.9	1.2	
재 활 용 시 설 용 지	9,620.7	0.4	
지 원 시 설 용 지	57,033.4	2.5	
지 원 시 설 용 지	52,573.4	2.3	
주 유 소 용 지	4,460.0	0.2	
주 거 용 지	5,693.6	0.3	22세대
공 공 시 설 용 지	806,537.2	35.9	
공 원 · 녹 지	226,270.8	10.1	
공 원	66,852.2	3.0	3개소
녹 지	138,754.4	6.2	11개소
저 류 시 설	20,664.2	0.9	4개소
기 타 시 설 용 지	580,266.4	25.8	
폐 기 물 처 리 시 설	38,680.9	1.7	1개소
폐 수 종 말 처 리 시 설	40,088.4	1.8	1개소
빗 물 펌 프 장	4,139.6	0.2	1개소
변 전 소	3,993.1	0.2	1개소
주 차 장	23,587.5	1.0	7개소
공 영 차 고 지	9,998.7	0.4	1개소
도 로	459,778.2	20.5	

주) 1. 공원은 공원내 시설로 중복 지정된 저류시설 1개소(A = 20,613.0㎡) 포함면적임

○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

- 주요유치업종
- 유치업종 배치계획

중분류	업종명	면적 (㎡)	구성비 (%)	비고
-	합계	1,371,834.3	100.0%	
16 32	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, 가구 제조업	132,655.5	9.7%	
22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68,047.9	5.0%	
24	1차 금속 제조업	48,312.4	3.5%	
25 29	금속가공제품 제조업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¹⁾	23,146.9	1.7%	
26 27 28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, 의료, 정밀, 공학기기 및 시계제조업, 전기장비 제조업	130,891.8	9.5%	
29 25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²⁾	599,320.3	43.7%	
10	식료품 제조업 ³⁾	29,476.3	2.1%	
-	임대공장용지 ⁴⁾	17,205.6	1.3%	
-	복합업종 ⁵⁾	296,335.7	21.6%	
-	지식산업센터 ⁶⁾	26,441.9	1.9%	

- 주) 1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에 청정표면처리센터 (23,146.9㎡) 포함
 2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중 (25922)도금업 제외
 3. 식료품제조업 중 (1012)육류가공·저장처리업, (1021)수산식품 가공·저장처리업, (1071)떡·빵·과자류 제조업, (1073)면류, 마카로니·유사식품제조업, (1079)기타 식료품제조업'에 한함
 4. 제시된 9개 업종에 한해 입주를 희망하는 사업체에 임대
 5. (17)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, (20)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, (21)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(23)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(23991)아스콘 제조업, (23322)레미콘 제조업 제외), (31)기타 운송장비 제조업, (30)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, (33)기타 제품 제조업
 6. 제시된 9개 업종과 (10)식품 제조업, (11)음료 제조업, (13)섬유제품제조업, (14)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, (15)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, (17)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, (18)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, (20)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, (33)기타 제품 제조업

4. 사업시행지역 위치 및 면적 (변경 없음)

- 위치: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-243번지 일원
- 면적: 2,250,719.2㎡

5. 사업시행기간 (변경 없음)

- 시행방법: 수용방식
- 시행기간: 2015년 5월

6.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

가.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
1) 용도지역 결정 조서 (변경)

구 분	기정		증감 면 적 (㎡)	변경		비고
	면 적 (㎡)	구성비 (%)		면 적 (㎡)	구성비 (%)	
총 계	2,250,701.6	100.0	17.6	2,250,719.2	100.0	
주 거 지 역	21,022.6	0.9	감) 31.3	20,991.3	0.9	
제1종일반주거지역	21,022.6	0.9	감) 31.3	20,991.3	0.9	
공 업 지 역	2,229,679.0	99.1	48.9	2,229,727.9	99.1	
일 반 공 업 지 역	2,126,375.1	94.5	43.0	2,126,418.1	94.5	
준 공 업 지 역	103,303.9	4.6	5.9	103,309.8	4.6	

2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(변경 없음)

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위 치	면적 (㎡)	비고
㉔	인천 김단일반산업단지 제1 종지구단위계획구역	·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 - 243일원	2,250,719.2	

나.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) 도로

① 도로시설 총괄표 (정정)

(단위 : 개, m, ㎡)

구 분		폭원 (m)	노선수 (개소)	연장 (m)	면 적 (㎡)		비고	
					기정	변경		
합 계			65	22,581	459,765.2	459,778.2		
일 반 도 로	광로	소계	-	1	1,590	63,600.0	63,600.0	
		1류	-	-	-	-	-	
		2류	-	-	-	-	-	
		3류	40	1	1,590	63,600.0	63,600.0	
	대로	소계	-	6	5,145	128,625.0	128,625.0	
		1류	-	-	-	-	-	
		2류	-	-	-	-	-	
		3류	25	6	5,145	128,625.0	128,625.0	
	중로	소계	-	48	14,848	241,309.0	241,309.0	
		1류	20~22	9	3,448	74,772.0	74,772.0	
		2류	15	30	9,637	144,855.0	144,855.0	
		3류	12	9	1,763	21,682.0	21,682.0	
	소로	소계	-	10	998	8,531.0	8,531.0	
		1류	10	4	507	5,051.0	5,051.0	
		2류	8	1	201	1,608.0	1,608.0	
		3류	6	1	14	84.0	84.0	
특수도로	3류	6~8	4	276	1,788.0	1,788.0	보행자도로	
기 타					17,700.2	17,713.2	가감속차로 등	

② 도로 결정 조서 (변경)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기능	연장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광로	3	23	40	주간선도로	10,610 (1,590)	동측행정구역계	대로 2-61	일반도로		인고-118 (98.6.12)	
기정 변경	대로	3	58	25	주간선도로	8,427 (969)	동측행정구역계 동측행정구역계	지구계 (오류동 1044) 지구계 (오류동 1643-10)	일반도로		인고-122 (06.7.24)	
기정 변경	대로	3	114	25	보조간선도로	2,762 (542)	지구계 (오류동 1434) 지구계 (오류동 1610-10)	서측행정구역계 서측행정구역계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대로	3	115	25	보조간선도로	1,320	광로 3-23	대로 3-114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대로	3	116	25	보조간선도로	498	광로3-23	대로3-58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대로	3	117	25	보조간선도로	1,319	광로 3-23	대로 3-114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대로	3	118	25	보조간선도로	497	광로 3-23	대로 3-58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 변경	중로	1	140	20	집산도로	675 (298)	광로 3-23 광로 3-23	대로 3-59 (오류동 410-306) 대로 3-59 (오류동 1695)	일반도로		인고-182 (00.10.14)	
기정	중로	1	362	22	집산도로	369	대로 3-117	대로 3-115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중로	1	363	22	집산도로	1,477	대로 3-117	지구계 (대로 3-64)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중로	1	364	20	집산도로	244	광로 3-23	중로 1-363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중로	1	365	22	집산도로	371	대로 3-117	대로 3-115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 변경	중로	1	366	22	집산도로	117	대로 3-115 대로 3-115	지구계 (오류동 1251) 지구계 (오류동 1623-9)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 변경	중로	1	367	22	집산도로	117	대로 3-115 대로 3-115	지구계 (오류동 1144) 지구계 (오류동 1623-9)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중로	1	368	22	집산도로	291	광로 3-23	중로 1-363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중로	1	369	22	집산도로	164	중로 1-363	중로 2-655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 변경	중로	2	655	15	집산도로	993	중로 1-363 중로 1-363	지구계 (오류동 410-691) 지구계 (오류동 1636-2)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중로	2	656	15	집산도로	155	중로 1-363	중로 2-655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중로	2	657	15	집산도로	292	중로 1-363	중로 1-368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중로	2	658	15	집산도로	266	중로 1-363	중로 2-661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중로	2	659	15	집산도로	376	중로 1-363	중로 2-661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중로	2	661	15	집산도로	468	중로 1-368	중로 1-364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중로	2	662	15~ 21	집산도로	222	광로 3-23	중로 1-140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기능	연장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중로	2	663	15	집산도로	490	대로 3-58	중로 1-140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중로	2	664	15	집산도로	329	대로 3-118	중로 2-663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중로	2	665	15	집산도로	397	대로 3-118	중로 2-663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중로	2	666	15	집산도로	315	대로 3-117	중로 1-364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중로	2	667	15	집산도로	243	대로 3-118	중로 2-735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중로	2	668	15	집산도로	367	대로 3-118	대로 3-116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중로	2	669	15	집산도로	369	대로 3-117	대로 3-115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중로	2	670	15	집산도로	370	대로 3-117	대로 3-115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중로	2	671	15	집산도로	284	대로 3-117	중로 2-672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중로	2	672	15	집산도로	372	대로 3-117	대로 3-115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중로	2	673	15	집산도로	373	대로 3-117	대로 3-115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 변경	중로	2	674	15	집산도로	106	대로 3-58	유수지(가) (오류동 410-31)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							대로 3-58	유수지(나) (오류동 1644-5)				
기정	중로	2	675	15	집산도로	452	중로 1-369	중로 2-655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중로	2	735	15	집산도로	395	대로 3-58	중로 2-668	일반도로		인고-35 (10.02.08)	
기정	중로	2	736	15	집산도로	322	대로 3-58	대로 3-58	일반도로		인고-35 (10.02.08)	
기정	중로	2	737	15	집산도로	201	대로 3-58	중로 2-664	일반도로		인고-35 (10.02.08)	
	중로	3	249	12	집산도로	383	중로 2-665	중로 2-665	일반도로		인고-35 (10.02.08)	
	중로	3	250	12	집산도로	158	중로 1-363	중로 2-659	일반도로		인고-35 (10.02.08)	
	중로	3	251	12	집산도로	158	중로 1-363	중로 2-659	일반도로		인고-35 (10.02.08)	
	중로	3	392	12	국지도로	40	중로 2-662	중로 3-393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 변경	중로	3	393	12	국지도로	376	중로 1-140	지구계 (오류동 410-699)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							중로 1-140	지구계 (오류동 1665-2)				
기정 변경	중로	3	394	12~16	국지도로	40	중로 1-140	지구계 (오류동 410-10)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							중로 1-140	지구계 (오류동 395-93)				
기정	중로	3	가	12	국지도로	118	대로 3-114	폐기물처리시설	일반도로		인고-33 (13.02.28)	
기정	중로	3	나	12~15	국지도로	226	중로 2-666	중로 2-666	일반도로		인고-33 (13.02.28)	
기정	중로	3	다	12	국지도로	264	중로 1-363	중로 2-656	일반도로		인고-33 (13.02.28)	
기정	소로	1	1	10	국지도로	179	중로 2-663	소로 1-2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소로	1	2	10	국지도로	237	중로 3-394	소로 1-1	일반도로			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기능	연장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소로	1	3	10	국지도로	60	소로 1-2	소로 1-1	일반도로			
기정 변경	소로	2	1	8	국지도로	201	소로 1-1	지구계 (오류동368)	일반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							소로 1-1	지구계 (오류동369-5)				
기정	소로	1	가	10	국지도로	31	중로 1-140	중로 2-마	일반도로		인고-33 (13.02.28)	
기정 변경	소로	3	가	6	국지도로	14	지구계 (오류동1147)	지구계 (오류동1147)	일반도로		인고-33 (13.02.28)	
							지구계 (오류동1143)	지구계 (오류동1143)				
기정	소로	3	1	6	특수도로	29	중로 1-140	소로 1-2	보행자전 용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소로	3	2	6	특수도로	78	중로 1-363	중로 2-675	보행자전 용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소로	3	3	6	특수도로	80	중로 2-655	중로 2-675	보행자전 용도로		인고-366 (08.12.29)	
기정	소로	3	나	6~8	특수도로	89	광로 3-23	중로 2-666	보행자전 용도로		인고-33 (13.02.28)	

※ ()는 산업단지내 연장 및 기·종점

■ 도로 변경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대3-58	대3-58	· 종점 변경: 지구계(오류동 1044) → 지구계(오류동 1643-10)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
대3-114	대3-114	· 기점 변경: 지구계(오류동 1434) → 지구계(오류동 1610-10)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
중1-140	중1-140	· 종점 변경: 대로 3-59(오류동 410-306) → 대로 3-59(오류동 1695)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
중1-366	중1-366	· 종점 변경: 지구계(오류동 1251) → 지구계(오류동 1623-9)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
중1-367	중1-367	· 종점 변경: 지구계(오류동 1144) → 지구계 (오류동 1623-9)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
중2-655	중2-655	· 종점 변경: 지구계(오류동410-691) → 지구계(오류동1636-2)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
중2-674	중2-674	· 종점 변경: 유수지(오류동 410-31) → 유수지(오류동1644-5)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
중3-393	중3-393	· 종점 변경: 지구계(오류동 410-699) → 지구계 (오류동 1665-2)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
중3-394	중3-394	· 종점 변경: 지구계(오류동 410-10) → 지구계 (오류동 395-93)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
소2-1	소2-1	· 종점 변경: 지구계(오류동368) → 지구계(오류동369-5)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
소3-가	소3-가	· 기점 변경: 지구계(오류동1147)→지구계(오류동1143) · 종점 변경: 지구계(오류동1147) → 지구계(오류동1143)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

나) 주차장 결정 조서 (변경 및 정정)

구분	도면표시 번	도면표시 호	시설명	위 치	면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기정	합	계		-	23,589.9		
변경				-	23,587.5		
기정	㉠	주차장		서구 오류동 410-88 일원	3,765.2	인고-366 (08.12.29)	준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40-1	3,765.3		
기정	㉡	주차장		서구 오류동 410-243 일원	3,884.1	인고-366 (08.12.29)	준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58-9	3,883.5		
기정	㉢	주차장		서구 오류동 410-37 일원	1,650.2	인고-366 (08.12.29)	일반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39-12	1,650.2		
기정	㉣	주차장		서구 오류동 410-37 일원	1,650.2	서구-63 (17.6.5)	일반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39-12	1,650.2		
기정	㉤	주차장		서구 오류동 410-180 일원	3,023.3	인고-366 (08.12.29)	일반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63-1	3,023.8		
기정	㉥	주차장		서구 오류동 1268-1 일원	2,097.3	인고-366 (08.12.29)	준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515-5	2,097.4		
기정	㉦	주차장		서구 오류동 1031 일원	2,696.6	인고-366 (08.12.29)	일반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44-9	2,694.2		
기정	㉧	주차장		서구 오류동 410-270 일원	4,822.8	인고-366 (08.12.29)	일반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30-9	4,822.9		

■ 주차장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㉠	주차장	· 위치 변경: 오류동 410-88 일원 → 오류동 1640-1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㉡	주차장	· 위치 변경: 오류동 410-243 일원 → 오류동 1658-9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㉢	주차장	· 위치 변경: 오류동 410-37 일원 → 오류동 1639-12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㉣	주차장	· 위치 변경: 오류동 410-37 일원 → 오류동 1639-12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㉤	주차장	· 위치 변경: 오류동 410-180 일원 → 오류동 1663-1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㉥	주차장	· 위치 변경: 오류동 1268-1 일원 → 오류동 1515-5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㉦	주차장	· 위치 변경: 오류동 1031 일원 → 오류동 1644-9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㉧	주차장	· 위치 변경: 오류동 410-270 일원 → 오류동 1630-9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
다) 자동차정류장 결정 조서 (변경 및 정정)

구분	도면표시 번	도면표시 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기정	㉠	자동차 정류장		공영 차고지	서구 오류동 1266 일원	9,999.5	인고-366 (08.12.29)	일반공업지역
변경					서구 오류동 1620-1	9,998.7		

■ 자동차정류장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	시설명	변경 내용	‘변경 사유
㉡	자동차 정류장	· 위치 변경: 오류동 1266 일원 → 오류동 1620-1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
라) 녹지 결정 조서 (변경 및 정정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기정	합 계			-	193,539.8 (138,761.8)		
변경				-	193,532.4 (138,754.4)		
기정	㉑	㉑호 녹지	완충녹지	서구 오류동 410-435번지 일원	11,676.2	인고-366 (08.12.29)	일반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44-11	11,675.7		
기정	㉒	㉒호 녹지	완충녹지	서구 오류동 368번지 일원	18,572.8	인고-366 (08.12.29)	일반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55-8	18,573.1		
기정	㉓	㉓호 녹지	완충녹지	서구 오류동 410-243번지 일원	5,634.2	인고-366 (08.12.29)	제1종 일반주거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59-14 일원	5,634.6		
기정	㉔	㉔호 녹지	완충녹지	서구 오류동 410-457번지 일원	4,393.3	인고-366 (08.12.29)	일반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64	4,393.9		
기정	㉕	㉕호 녹지	완충녹지	서구 오류동 410-274번지 일원	2,858.7	인고-366 (08.12.29)	일반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36-3	2,858.6		
기정	㉖	㉖호 녹지	완충녹지	서구 오류동 410-433번지 일원	52,099.9	인고-366 (08.12.29)	일반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66 일원	52,095.9		
기정	㉗	㉗호 녹지	완충녹지	서구 오류동 1420번지 일원	16,960.5	인고-366 (08.12.29)	일반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10-8 일원	16,959.2		
기정	㉘	㉘호 녹지	완충녹지	서구 오류동 410-178번지 일원	2,060.9	인고-147 (11.06.20)	일반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63-9 일원	2,061.1		
기정	㉙	㉙호 녹지	완충녹지	서구 오류동 1032번지 일원	4,740.8	인고-366 (08.12.29)	일반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44-10 일원	4,738.5		
기정	⑥	당하1녹 지	완충녹지	서구 검단 광3-23호선변 북측	25,800.4 (7,132.4)	서구고사-22호 (05.04.12)	일반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63-7 일원	25,800.5 (7,132.5)		
기정	⑦	당하2녹 지	완충녹지	서구검단 광3-23호선변 남측	48,742.1 (12,632.1)	서구고사-22호 (05.04.12)	일반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39-13 일원	48,741.3 (12,631.3)		

※ ()는 산업단지내 위치 및 면적

■ 녹지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㉑	완충녹지	· 위치 변경: 오류동 410-435번지 일원 → 오류동 1644-11	· 구 지변을 신 지변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㉒	완충녹지	· 위치 변경: 오류동 368번지 일원 → 오류동 1655-8	· 구 지변을 신 지변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㉓	완충녹지	· 위치 변경: 오류동 410-243번지 일원 → 오류동 1659-14 일원	· 구 지변을 신 지변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㉔	완충녹지	· 위치 변경: 오류동 410-457번지 일원 → 오류동 1664	· 구 지변을 신 지변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㉕	완충녹지	· 위치 변경: 오류동 410-274번지 일원 → 오류동 1636-3	· 구 지변을 신 지변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㉖	완충녹지	· 위치 변경: 오류동 410-433번지 일원 → 오류동 1666 일원	· 구 지변을 신 지변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㉗	완충녹지	· 위치 변경: 오류동 1420번지 일원 → 오류동 1610-8 일원	· 구 지변을 신 지변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㉘	완충녹지	· 위치 변경: 오류동 410-178번지 일원 → 오류동 1663-9 일원	· 구 지변을 신 지변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㉙	완충녹지	· 위치 변경: 오류동 1032번지 일원 → 서구 오류동 1644-10 일원	· 구 지변을 신 지변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⑥	완충녹지	· 위치 변경 서구 감단 광32호선변 북측 → 서구 오류동 1637 일원	· 구 지변을 신 지변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⑦	완충녹지	· 위치 변경 서구감단 광32호선변 남측 → 서구 오류동 1613 일원	· 구 지변을 신 지변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
마) 공원 (변경)

■ 총괄표 (산업단지 내) (변경 및 정정)

구 분	행정구역(㎡)				시가화구역(㎡)			
	기정		변경		기정		변경	
	개소	면적	개소	면적	개소	면적	개소	면적
합 계	3	66,849.9	3	66,852.2	3	66,849.9	3	66,852.2
도시자연공원	-	-	-	-	-	-	-	-
근 린 공 원	3	66,849.9	3	66,852.2	3	66,849.9	3	66,852.2
어린이공원	-	-	-	-	-	-	-	-
소 공 원	-	-	-	-	-	-	-	-
묘 지 공 원	-	-	-	-	-	-	-	-
체 육 공 원	-	-	-	-	-	-	-	-

■ 공원 결정 조서 (변경 및 정정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적(㎡)	최초 결정일	비 고
기정	합 계			-	66,849.9		
변경				-	66,852.2		
기정	㉒	㉒호공원	근린공원	서구 오류동 410-243번지 일원	10,971.1	인고-366	일반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56-4	10,970.2	(08.12.29)	
기정	㉓	㉓호공원	근린공원	서구 오류동 410-197번지 일원	10,868.5	인고-366	일반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65-2	10,869.3	(08.12.29)	
기정	㉕	㉕호공원	근린공원	서구 오류동 1319번지 일원	45,010.3	인고-366	일반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13-1 일원	45,012.7	(08.12.29)	

■ 공원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㉠	근린공원	· 위치 변경: 오류동 410-243번지 일원 → 오류동 1656-4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㉡	근린공원	· 위치 변경: 오류동 410-197번지 일원 → 오류동 1665-2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㉢	근린공원	· 위치 변경: 오류동 1319번지 일원 → 오류동 1613-1 일원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
바)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(변경 및 정정)

■ 단위시설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위 치	면적(㎡)	최초 결정일	비 고
기정	㉦	변전소	서구 오류동 410-496번지 일원	3,993.6	인고-366 (08.12.29)	일반공업지역
변경			서구 오류동 1636-1	3,993.1		

■ 전기공급설비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㉦	변전소	· 위치 변경: 오류동 410-496번지 일원 → 오류동 1636-1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
사) 유수지 결정조서 (변경 및 정정)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적(㎡)	최초 결정일	비 고
기정	합 계		-	-	41,278.0	-	-
변경					41,277.2		
기정	㉧	유수지	저류시설	서구 오류동 410-31번지 일원	13,270.1	인고-366 (08.12.29)	일반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44-5	13,269.4		
기정	㉨	유수지	저류시설	서구 오류동 410-416번지 일원	7,280.2	인고-366 (08.12.29)	일반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36-2	7,280.1		
기정	㉩	유수지	저류시설	서구 오류동 1319번지 일원	20,613.0	인고-366 (08.12.29)	일반공업지역 (공원)과 중복결정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11-4	20,613.0		
기정	㉪	유수지	저류시설	서구 오류동 1461번지 일원	114.7	-	일반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11-20	114.7		

■ 유수지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㉧	저류시설	· 위치 변경: 오류동 410-31번지 일원 → 오류동 1644-5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㉨	저류시설	· 위치 변경: 오류동 410-416번지 일원 → 오류동 1636-2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㉩	저류시설	· 위치 변경: 오류동 1319번지 일원 → 오류동 1611-4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㉪	저류시설	· 위치 변경: 오류동 1461번지 일원 → 오류동 1611-20	·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
아) 방수설비 결정조서 (변경 및 정정)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위 치	면적(㎡)	최초 결정일	비 고
기정	㉔	방수설비 (빗물펌프장)	서구 오류동 410-116번지 일원	4,140.1	인고-147 (11.06.20)	일반공업지역
변경			서구 오류동 1665-1	4,139.6		

■ 방수설비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㉔	방수설비	· 위치 변경: 오류동 410-116번지 일원 → 오류동 1665-1	· 구 자변을 신 자변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
자)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(변경 및 정정)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기정	㉔	폐기물 처리시설	일반폐기물 처리시설	서구 오류동 1442번지 일원	38,681.7	인고-366 (08.12.29)	일반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10-3	38,680.9		

■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사유서

도면표 시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㉔	방수설비	· 위치 변경: 오류동 1442번지 일원 → 오류동 1610-3	· 구 자변을 신 자변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
차)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(변경 및 정정)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기정	㉔	수질오염 방지시설	폐수종말 처리시설	서구 오류동 1423번지 일원	40,088.0	인고-366 (08.12.29)	일반공업지역
변경				서구 오류동 1610-4	40,088.4		

■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㉔	방수설비	· 위치 변경: 오류동 1423번지 일원 → 오류동 1610-4	· 구 자변을 신 자변으로 변경 및 면적 오기 정정

2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 및 정정)조서
가) 공장용지 (정정)

도면번호	기 정		변 경		획 지		비 고
	가구 번호	면적 (㎡)	가구 번호	면적 (㎡)	위치	면적 (㎡)	
공장용지 (I)	I 1	13,044.7	I 1	13,044.7	-	-	• 최소획지: 1,650㎡
	I 2	63,725.0	I 2	63,725.0	-	-	
	I 3	40,506.1	I 3	40,506.1	-	-	
	I 4	37,562.9	I 4	37,562.9	-	-	
	I 5	7,950.8	I 5	7,950.8	-	-	
	I 6	17,421.4	I 6	17,421.4	-	-	
	I 7	21,347.6	I 7	21,347.6	-	-	
	I 8	69,255.4	I 8	69,255.4	-	-	
	I 9	47,416.5	I 9	47,416.5	-	-	
	I 10	69,649.6	I 10	69,649.6	-	-	
	I 11	36,203.9	I 11	36,203.9	-	-	
	I 12	73,111.5	I 12	73,111.5	-	-	
	I 13	28,939.4	I 13	28,939.4	-	-	
	I 14	28,528.8	I 14	28,528.8	-	-	
	I 15	43,343.3	I 15	43,343.3	-	-	
	I 16	40,820.7	I 16	40,820.7	-	-	
	I 17	43,038.1	I 17	43,038.1	-	-	
	I 18	8,275.6	I 18	8,275.6	-	-	
	I 19	20,770.7	I 19	20,770.7	-	-	
	I 20	46,854.2	I 20	46,854.2	-	-	
	I 21	26,441.9	I 21	26,441.9	-	-	• 지식산업센터용지

〈표계속〉

도면번호	기 정		변 경		확 지		비 고
	가구 번호	면적 (㎡)	가구 번호	면적 (㎡)	위치	면적 (㎡)	
공장용지 (I)	I 22	58,701.6	I 22	58,701.6	-	-	• 최소확지 : 1,650㎡
	I 23	19,230.1	I 23	19,230.1	-	-	
	I 24	13,653.4	I 24	13,653.4	-	-	
	I 45	16,732.9	I 45	16,732.9	-	-	
	I 25	35,656.4	I 25	35,656.4	-	-	
	I 26	31,269.3	I 26	31,269.3	-	-	
	I 27	8,323.9	I 27	8,323.9	-	-	
	I 46	24,150.3	I 46	24,150.3	-	-	
	I 28	18,080.8	I 28	18,080.8	-	-	
	I 29	17,440.3	I 29	17,440.3	-	-	
	I 30	17,205.6	I 30	17,205.6	-	-	• 임대부지 • 최소확지:1,650㎡
	I 31	16,586.5	I 31	16,586.5	-	-	• 최소확지 : 1,650㎡
	I 37	11,335.9	I 37	11,335.9	-	-	
	I 38	18,140.4	I 38	18,140.4	-	-	
	I 39	6,641.2	I 39	6,641.2	-	-	
	I 32	29,649.1	I 32	29,649.1	-	-	
	I 33	11,435.2	I 33	11,435.2	-	-	
	I 47	21,902.1	I 47	21,902.1	-	-	
	I 34	31,078.1	I 34	31,078.1	-	-	
	I 35	42,749.2	I 35	42,749.2	-	-	
	I 36	15,806.7	I 36	15,806.7	-	-	
	I 40	3,876.3	I 40	3,876.3	-	-	
	I 41	10,957.0	I 41	10,957.0	-	-	
	I 42	21,769.6	I 42	21,769.6	-	-	
	I 43	28,754.6	I 43	28,754.6	-	-	
	I 44	7,806.3	I 44	7,806.3	-	-	
	I 48	23,146.9	I 48	23,146.9	-	-	• 지식산업센터용지
	I 49	25,546.5	I 49	25,546.5	-	-	• 최소확지:1,650㎡
합 계		1,371,816.0		1,371,834.3	-	-	

나) 단독주택용지 (정정)

■ 기 정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 (㎡)	확 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
단독주택 (H)	H 1	1,799.2	①	254.5	· 합병불가 · 분할불가
			②	241.6	
			③	243.9	
			④	244.0	
			⑤	244.3	
			⑥	243.0	
			⑦	327.9	
	H 2	2,518.6	①	259.8	
			②	247.6	
			③	248.7	
			④	247.7	
			⑤	255.9	
			⑥	261.6	
			⑦	247.4	
			⑧	247.4	
			⑨	247.3	
			⑩	255.2	
	H 3	1,376.1	①	281.8	
			②	273.8	
			③	273.8	
			④	273.8	
			⑤	272.9	
합 계		5,693.9		5,693.9	

■ 변경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 (㎡)	획 지		비 고	
			위치	면적(㎡)		
단독주택 (H)	H 1	1,799.3	①	254.5		
			②	241.5		
			③	243.9		
			④	244.1		
			⑤	244.4		
			⑥	243.0		
			⑦	327.9		
	H 2	2,518.2	①	259.8		· 합병불가 · 분할불가
			②	247.5		
			③	248.6		
			④	247.7		
			⑤	255.8		
			⑥	261.6		
			⑦	247.3		
			⑧	247.3		
			⑨	247.4		
			⑩	255.2		
	H 3	1,376.1	①	281.8		
			②	273.9		
			③	273.8		
			④	273.7		
			⑤	272.9		
합 계		5,693.6		5,693.6		

다) 지원시설용지 (정정)

■ 기정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 (㎡)	확 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
지원시설용지 (S)	S 2	18,409.0	①	2,029.1	- 공동개발 권장, 합병은 인접한 확지에 한하여 허용 - 분할불가 (단, 합병된 확지를 합병전의 확지선으로 재분할 가능)
			②	2,608.1	
			③	674.0	
			④	676.8	
			⑤	628.0	
			⑥	595.6	
			⑦	641.9	
			⑧	660.8	
			⑨	660.1	
			⑩	651.0	
			⑪	596.0	
			⑫	613.5	
			⑬	672.3	
			⑭	2,050.3	
			⑮	984.6	
			⑯	978.1	
			⑰	945.2	
			⑱	1,743.6	
	S _{2a}	4,527.6	①	706.6	
			②	520.0	
			③	519.5	
			④	512.6	
			⑤	697.5	
			⑥	521.0	
			⑦	521.7	
			⑧	528.7	
	S 2b	4,663.1	①	526.9	
			②	520.1	
			③	519.5	
			④	800.6	
			⑤	514.1	
			⑥	521.2	
			⑦	522.0	
			⑧	738.7	

<표계속>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 (㎡)	확 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
지원시설용지 (S)	S 3	7,919.3	①	3,958.9	· 공동개발 권장, 합병은 인접한 확지에 한하여 허용 · 분할불가 (단, 합병된 확지를 합병전의 확지선으로 재분할 가능)
			②	3,960.4	
	S 3a	8,580.8	①	885.7	
			②	819.6	
			③	823.1	
			④	818.4	
			⑤	1,456.3	
			⑥	1,472.7	
			⑦	1,012.6	
			⑧	627.3	
			⑨	665.1	
	S 3b	5,606.4	①	565.0	
			②	560.1	
			③	560.1	
			④	560.1	
			⑤	564.9	
			⑥	557.9	
			⑦	560.1	
			⑧	560.2	
			⑨	560.1	
			⑩	557.9	
	S 5	2,868.9	①	1,435.0	
			②	1,433.9	
합 계		52,575.1		52,575.1	

■ 변경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
지원시설용지 (S)	S 2	18,408.6	①	2,028.7	- 공동개발 권장, 합병은 인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 - 분할불가 (단, 합병된 획지를 합병전의 획지선으로 재분할 가능)
			②	2,608.1	
			③	674.0	
			④	677.0	
			⑤	627.9	
			⑥	595.8	
			⑦	642.1	
			⑧	660.8	
			⑨	660.0	
			⑩	650.9	
			⑪	596.0	
			⑫	613.5	
			⑬	672.3	
			⑭	2,050.1	
			⑮	984.6	
			⑯	978.2	
			⑰	945.0	
			⑱	1,743.6	
	S 2a	4,527.3	①	706.7	
			②	520.1	
			③	519.5	
			④	512.5	
			⑤	697.4	
			⑥	520.9	
			⑦	521.7	
			⑧	528.5	
	S 2b	4,662.5	①	526.9	
			②	520.1	
			③	519.4	
			④	800.6	
			⑤	514.0	
			⑥	521.1	
			⑦	521.8	
			⑧	738.6	

<표계속>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 (㎡)	확 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
지원시설용지 (S)	S 3	7,919.6	①	3,959.2	· 공동개발 권장, 합병은 인접한 확지에 한하여 허용 · 분할불가 (단, 합병된 확지를 합병전의 확지선으로 재분할 가능)
			②	3,960.4	
	S 3a	8,580.8	①	885.7	
			②	819.7	
			③	823.1	
			④	818.2	
			⑤	1,456.2	
			⑥	1,472.7	
			⑦	1,012.6	
			⑧	627.5	
			⑨	665.1	
	S 3b	5,606.0	①	565.1	
			②	560.1	
			③	560.1	
			④	560.0	
			⑤	564.9	
			⑥	557.8	
			⑦	560.0	
			⑧	560.2	
			⑨	559.9	
			⑩	557.9	
	S 5	2,868.6	①	1,434.8	
			②	1,433.8	
합 계		52,573.4		52,573.4	

라) 재활용시설용지 (정정)

■ 기정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
재활용시설 (RE)	RE	9,621.8	①	9,621.8	
합 계		9,621.8	-	9,621.8	

■ 변경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
재활용시설 (RE)	RE	9,620.7	①	9,620.7	
합 계		9,620.7	-	9,620.7	

마) 주유소용지 (정정)

■ 기정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
주유소(O)	O 1	2,018.7	①	2,018.7	
	O 2	2,441.4	①	2,441.4	
합 계		4,460.1	-	4,460.1	

■ 변경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
주유소(O)	O 1	2,018.5	①	2,018.5	
	O 2	2,441.5	①	2,441.5	
합 계		4,460.0	-	4,460.0	

바) 주차장 (정정)

■ 기정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
주차장(P)	P 1	3,765.2	①	3,765.2	
	P 2	3,884.1	①	3,884.1	
	P 3	1,650.2	①	1,650.2	
	P 8	1,650.2	②	1,650.2	
	P 4	3,023.3	①	3,023.3	
	P 5	2,097.3	①	2,097.3	
	P 6	2,696.6	①	2,696.6	
	P 7	4,822.8	①	4,822.8	
합 계		23,589.7	-	23,589.7	

■ 변경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
주차장(P)	P 1	3,765.3	①	3,765.3	
	P 2	3,883.5	①	3,883.5	
	P 3	1,650.2	①	1,650.2	
	P 8	1,650.2	②	1,650.2	
	P 4	3,023.8	①	3,023.8	
	P 5	2,097.4	①	2,097.4	
	P 6	2,694.2	①	2,694.2	
	P 7	4,822.9	①	4,822.9	
합 계		23,587.5	-	23,587.5	

사) 공영차고지 (정정)

■ 기정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
공영차고지 (PP)	PP	9,999.5	①	9,999.5	
합 계		9,999.5	-	9,999.5	

■ 변경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
공영차고지 (PP)	PP	9,998.7	①	9,998.7	
합 계		9,998.7	-	9,998.7	

아) 유수지 (정정)

■ 기 정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 (㎡)	확 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
유수지 (WR)	WR 1	13,270.1	①	13,270.1	
	WR 2	7,280.2	①	7,280.2	
	WR 3	20,613.0	①	20,613.0	
	WR 4	114.7	①	114.7	
합 계		41,278	-	41,278	

주) ㉠호 유수지(WR3)은 ㉠호 공원 내 시설과 연계설치(A= 20,613.0㎡)

■ 변 경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 (㎡)	확 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
유수지 (WR)	WR 1	13,269.4	①	13,269.4	
	WR 2	7,280.1	①	7,280.1	
	WR 3	20,613.0	①	20,613.0	
	WR 4	114.7	①	114.7	
합 계		41,277.2	-	41,277.2	

주) ㉠호 유수지(WR3)은 ㉠호 공원내 시설과 연계설치(A = 20,613.0㎡)

자) 변전소 (정정)

■ 기 정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 (㎡)	확 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
변전소 (TS)	TS	3,993.6	①	3,993.6	
합 계		3,993.6	-	3,993.6	

■ 변 경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 (㎡)	확 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
변전소 (TS)	TS	3,993.1	①	3,993.1	
합 계		3,993.1	-	3,993.1	

차) 방수설비(빗물펌프장) (정정)

■ 기 정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 (㎡)	확 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
방수설비 (RP)	RP	4,140.1	①	4,140.1	
합 계		4,140.1	-	4,140.1	

■ 변경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 (㎡)	확 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
방수설비 (RP)	RP	4,139.6	①	4,139.6	
합 계		4,139.6	-	4,139.6	

카) 폐기물처리시설 (정정)

■ 기 정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 (㎡)	확 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
폐기물처리시설 (W)	W	38,681.7	①	38,681.7	
합 계		38,681.7	-	38,681.7	

■ 변경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 (㎡)	확 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
폐기물처리시설 (W)	W	38,680.9	①	38,680.9	
합 계		38,680.9	-	38,680.9	

타) 폐수종말처리장 (정정)

■ 기 정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 (㎡)	확 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
폐수종말처리시설 (WDP)	WDP	40,088.0	①	40,088.0	
합 계		40,088.0	-	40,088.0	

■ 변경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 (㎡)	확 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
폐수종말처리시설 (WDP)	WDP	40,088.4	①	40,088.4	
합 계		40,088.4	-	40,088.4	

3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조서

1) 공장용지 (변경 없음)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
공장 용지 ①	I5 I9 I11 I32 I33	용 도	허용용도	• 공장 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)
			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70%이하	
		용 적 률	350%이하	
		높이(층)	-	
		배 치	•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(보행자전용도로 제외)변과 평행	
		형 태	• 건축물의 전·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•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	
		주 차	• 시설면적 190㎡당 1대, 기계식주차장 불허 • 대형주차면(3.25m × 14.0m)을 전체 주차면의 5% 이상 확보하며, 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	
		색 채	주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(권장)
			보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(권장)
			강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(권장)
		건축선	-	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
공장 용지 (I)	I2 I7 I25 I26 I28 I31 I34 I36 I45 I46 I47	용 도	허용 용도	• 공장 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) •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(표준산업분류- 383)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
			불허 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70%이하	
		용 적 률	350%이하	
		높이(층)	-	
		배 치	•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(보행자전용도로 제외)변과 평행	
		형 태	• 건축물의 전·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•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	
		주 차	• 시설면적 190㎡당 1대, 기계식주차장 불허 • 대형주차면(3.25m × 14.0m)을 전체 주차면의 5% 이상 확보하며, 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	
		색 채	주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(권장)
			보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(권장)
			강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(권장)
		건축선	-	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
공장 용지 (I)	I1 I4 I29	용 도	허용용도	• 공장 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)
			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70%이하	
		용 적 륜	350%이하	
		높이(층)	-	
		배 치	•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(보행자전용도로 제외)변과 평행	
		형 태	• 건축물의 전·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•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	
		주 차	• 시설면적 190㎡당 1대, 기계식주차장 불허 • 대형주차면(3.25m × 14.0m)을 전체 주차면의 5% 이상 확보하며, 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	
		색 채	주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(권장)
			보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(권장)
			강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(권장)
		건축선	-	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
공장 용지 (I)	I3 I44	용 도	허용용도	• 공장 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)
			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70%이하	
		용 적 률	350%이하	
		높이(층)	-	
		배 치	•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(보행자전용도로 제외)변과 평행	
		형 태	• 건축물의 전·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•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	
		주 차	• 시설면적 190㎡당 1대, 기계식주차장 불허 • 대형주차면(3.25m × 14.0m)을 전체 주차면의 5% 이상 확보하며, 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	
		색 채	주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(권장)
			보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(권장)
			강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(권장)
		건축선	-	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
공장 용지 (1)	I6 I8 I10 I12 I13 I14 I16 I17 I20 I22 I24 I27 I35 I41 I42 I49	용 도	허용용도	• 공장 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)
			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70%이하	
		용 적 률	350%이하	
		높이(층)	-	
		배 치	•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(보행자전용도로 제외)변과 평행	
		형 태	• 건축물의 전·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•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	
		주 차	• 시설면적 190㎡당 1대, 기계식주차장 불허 • 대형주차면(3.25m × 14.0m)을 전체 주차면의 5% 이상 확보하며, 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	
		색 채	주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(권장)
			보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(권장)
			강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(권장)
		건축선	-	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
공장 용지 ①	I15 I18 I19 I23 I39 I40 I43	용 도	허용용도	• 공장 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)
			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70%이하	
		용 적 률	350%이하	
		높이(층)	-	
		배 치	•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(보행자전용도로 제외)변과 평행	
		형 태	• 건축물의 전·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•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	
		주 차	• 시설면적 190㎡당 1대, 기계식주차장 불허 • 대형주차면(3.25m × 14.0m)을 전체 주차면의 5% 이상 확보하며, 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	
		색 채	주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(권장)
			보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(권장)
			강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(권장)
		건축선	-	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
공장 용지 (I)	I37 I38	용 도	허용용도	• 공장 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)
			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70% 이하	
		용 적 륜	350% 이하	
		높이(층)	-	
		배 치	•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(보행자전용도로 제외)변과 평행	
		형 태	• 건축물의 전·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•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	
		주 차	• 시설면적 190㎡당 1대, 기계식주차장 불허 • 대형주차면(3.25m × 14.0m)을 전체 주차면의 5% 이상 확보하며, 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	
		색 채	주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(권장)
			보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(권장)
			강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(권장)
		건축선	-	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
공장 용지 (I)	I 48	용 도	허용 용도	• 지식산업센터 1.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의 시설을 말함 2.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능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표준산업분류:25)에 한한다. 3. 기타사항은 관련법(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,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등)을 따른다
			불허 용도	•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* 지식산업센터 내 불허용도 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동물병원, 단란주점, 의약품도매점, 안마시술소·안마원 용도는 불허)
		건 폐 율	70%이하	
		용 적 률	350%이하	
		높이(층)	-	
		배 치	•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(보행자전용도로 제외)변과 평행	
		형 태	• 건축물의 전·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	
		주 차	• 공장용: 시설면적 190㎡당 1대, 기타용 : 관련조례 준수 • 기계식 주차장 불허 • 확장형 주차단위구획(2.5m×5.1m) 20%이상 확보	
		색 채	주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(권장)
			보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(권장)
			강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(권장)
		건 축 선	-	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
공장 용지 (I)	I 21	용 도	허용 용도	• 지식산업센터 1.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의 시설을 말함 2.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능업종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받은 업종에 한함 3. 기타사항은 관련법(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,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등)을 따른다
			불허 용도	•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* 지식산업센터 내 불허용도 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동물병원, 단란주점, 의약품도매점, 안마시술소·안마원 용도는 불허)
		건 폐 율	70%이하	
		용 적 률	350%이하	
		높이(층)	-	
		배 치	•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(보행자전용도로 제외)변과 평행	
		형 태	• 건축물의 전·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	
		주 차	• 공장용: 시설면적 190㎡당 1대, 기타용 : 관련조례 준수 • 기계식 주차장 불허 • 확장형 주차단위구획(2.5m×5.1m) 20%이상 확보	
		색 채	주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(권장)
			보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(권장)
			강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(권장)
		건 축 선	-	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
공장 용지 (I)	I30	용 도	허용용도	• 공장 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)
			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70% 이하	
		용 적 률	350% 이하	
		높이(층)	-	
		배 치	•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(보행자전용도로 제외)변과 평행	
		형 태	• 건축물의 전·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•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	
		주 차	• 시설면적 190㎡당 1대, 기계식주차장 불허 • 대형주차면(3.25m × 14.0m)을 전체 주차면의 5% 이상 확보하며, 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	
		색 채	주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(권장)
			보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(권장)
			강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(권장)
		건축선	-	

2) 단독주택용지 (변경 없음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
단 독 주 택 용 지 (H)	H1 ~ H3	용 도	허용용도	• 단독주택 (다가구주택포함) • 1층에 한하여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(단,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의 4호 가목 및 나목에 한함)
			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60% 이하	
		용 적 률	200% 이하	
		높 이(층)	3층이하	
		형 태	• 건축물 외부: 건축설비 노출 금지 • 담장: 1.5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	
		주 차	•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 주차장 불허	
		색 채	주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단독주택 용지의 주조색(권장)
			보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단독주택 용지의 보조색(권장)
			강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단독주택 용지의 강조색(권장)
		건 축 선	• 소로1-1, 소로1-2, 소로3-1호선변 건축한계선 1m	

3) 지원시설용지 (변경 없음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
지 원 시 설 용 지 (S)	S2 - ①~⑱	용 도	허용 용도	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 • 의료시설(장례식장 제외) • 종교시설(납골당 제외) • 판매시설 • 운동시설 • 업무시설 • 교육연구시설(교육원, 직업훈련소, 학원, 연구소에 한함) • 자동차 관련시설(폐차장 제외)
			불허 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70% 이하	
		용적률	400% 이하	
		높이(층)	7층 이하	
		배 치	•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(보행자전용도로 제외)변과 평행 •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	
		형 태	• 저층부(1층)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서터 사용 -투시형 벽면: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%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-투시형 서터: 서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(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) •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, 색채 사용 •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 정원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•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	
		주 차	•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	
		색 채	주조색	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(권장)
			보조색	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(권장)
			강조색	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(권장)
		건축선	• 광로3-23, 대로 3-118, 중로1-140, 중로2-663, 중로2-665호선변 건축한계선 3m • 중로3-249호선변 건축한계선 2m	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
지 원 시 설 용 지 (S)	S2a - ①~⑧, S2b - ①~⑧	용 도	허용 용도	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 • 의료시설(장례식장 제외) • 종교시설(납골당 제외) • 판매시설 • 운동시설 • 업무시설 • 교육연구시설(교육원, 직업훈련소, 학원, 연구소에 한함) • 자동차 관련시설(폐차장 제외)
			불허 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70% 이하	
		용적률	400% 이하	
		높이(층)	7층 이하	
		배 치	•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(보행자전용도로 제외)변과 평행 •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	
		형 태	• 저층부(1층)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서터 사용 -투시형 벽면: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%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-투시형 서터: 서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(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) •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, 색채 사용 •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 정원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•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	
		주 차	•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	
		색 채	주조색	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(권장)
			보조색	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(권장)
			강조색	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(권장)
		건축선	• 중로2-665, 중로3-249호선변 건축한계선 3m	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
지 원 시 설 용 지 (S)	S3 - ①, ②	용 도	허용 용도	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에 한함) • 판매시설 • 교육연구시설(교육원, 직업훈련소, 학원, 연구소에 한함) • 운동시설 • 업무시설 • 공장(지식산업센터에 한함) • 자동차 관련시설(폐차장 제외)
			불허 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70% 이하	
		용적률	400% 이하	
		높이(층)	7층 이하	
		배 치	•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(보행자전용도로 제외)변과 평행 •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	
		형 태	• 저층부(1층)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-투시형 벽면: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%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-투시형 셔터: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(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) •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, 색채 사용 •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 정원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•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	
		주 차	•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	
		색 채	주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(권장)
			보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(권장)
			강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(권장)
		건축선	• 광로3-23, 중로2-666호선변 건축한계선 3m	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
지 원 시 설 용 지 (S)	S3a - ①~⑨	용 도	허용 용도	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에 한함) • 판매시설 • 교육연구시설(교육원, 직업훈련소, 학원, 연구소에 한함) • 운동시설 • 업무시설 • 공장(지식산업센터에 한함) • 자동차 관련시설(폐차장 제외)
			불허 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70% 이하	
		용적률	400% 이하	
		높이(층)	7층 이하	
		배 치	•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(보행자전용도로 제외)변과 평행 •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	
		형 태	• 저층부(1층)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-투시형 벽면: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%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-투시형 셔터: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(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) •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, 색채 사용 •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 정원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•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	
		주 차	•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	
		색 채	주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(권장)
			보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(권장)
			강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(권장)
		건축선	• 광로3-23, 중로1-364, 중로2-666호선변 건축한계선 3m • 중로3-나호선변 건축한계선 2m	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
지 원 시 설 용 지 (S)	S3b - ①~⑩	용 도	허용 용도	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에 한함) • 판매시설 • 교육연구시설(교육원, 직업훈련소, 학원, 연구소에 한함) • 운동시설 • 업무시설 • 공장(지식산업센터에 한함) • 자동차 관련시설(폐차장 제외)
			불허 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70% 이하	
		용적률	400% 이하	
		높이(층)	7층 이하	
		배 치	•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(보행자전용도로 제외)변과 평행 •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	
		형 태	• 저층부(1층)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서터 사용 - 투시형 벽면: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%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- 투시형 서터: 서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(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) •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, 색채 사용 •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 정원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•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	
		주 차	•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	
		색 채	주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(권장)
			보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(권장)
			강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(권장)
		건축선	• 중로2-666호선, 중로3-나호선변 건축한계선 3m	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
지 원 시 설 용 지 (S)	S5 ①, ②	용 도	허용 용도	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에 한함) • 판매시설 • 운동시설 • 업무시설 • 교육연구시설(교육원, 직업훈련소, 학원, 연구소에 한함) • 자동차 관련시설(폐차장 제외)
			불허 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70% 이하	
		용적률	400% 이하	
		높이(층)	7층 이하	
		배 치	•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(보행자전용도로 제외)변과 평행 •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	
		형 태	• 저층부(1층)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-투시형 벽면: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%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-투시형 셔터: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(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) •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, 색채 사용 •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 정원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•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	
		주 차	•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	
		색 채	주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(권장)
			보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(권장)
			강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(권장)
		건축선	• 대로3-117, 중로2-671, 중로2-672호선변 건축한계선 5m	

4) 재활용시설용지 (변경 없음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
재활용 시설 용지 (RE)	RE ①	용 도	허용 용도	• 재활용산업 (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)
			불허 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70% 이하	
		용적률	350% 이하	
		높이(층)	-	
		주 차	•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	

5) 주유소용지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
주유소 용 지 (S)	O 1 ~ O 2 - ①	용 도	허용 용도	•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(부대 시설 포함) •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(부대시 설 포함)
			불허 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70% 이하	
		용적률	400% 이하	
		높이(층)	5층 이하	
		배 치	• 각 시설별 관계법규에 따른 배치기준을 준수	
		색 채	• 정유업체 고유 색채 적용 가능 • 정유업체 고유 색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색채기준 준수	
			주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(권장)
			보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(권장)
			강조색	• 『첨부# 1.건축물별 추천배색』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(권장)
		건축선	• O1: 광로3-23, 대로3-118호선변 3m • O2: 광로3-23, 중로1-364호선변 5m	

6) 주차장 (변경 없음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
주차장 (P)	P1 ~ P8 ①	용 도	허용 용도	-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(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) - 근린생활시설 도입시 비율은 연면적의 30%이내 [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: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, 문화 및 집회시설(종교집회장 제외), 판매시설(상점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함), 운동시설(운동장, 골프연습장 제외),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]
			불허 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90% 이하	
		용적률	900% 이하	
		높이(층)	-	
		형태	-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시 지상부에 일부 주차장 설치 - 주차구획은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할 것 단, 불가피한 경우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가능	

7) 공영차고지 (변경 없음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
공 영 차고지 (PP)	PP - ①	용 도	허용 용도	자동차관련시설 중 『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』에 의한 차고 및 주차장에 한함
			불허 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70% 이하	
		용적률	350% 이하	
		높이(층)	-	

※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도 (S=1/5,000): 첨부 6

다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(변경 없음)

(1)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

구 분	계 획 내 용	비고
교통처리계획	•인천광역시 지방교통영향심의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검단 일반산업단지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따름 •주차장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확장형 주차단위구획(2.5m×5.1m) 20%이상 확보할 것	
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	•옥외광고물에 관한 기준 제시(권장) - “첨부2.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” 참조	
경관에 관한 사항	•대형 건축물에 의한 대형입면은 시각적 분절 등의 방법으로 위압감을 감소시키고 미관을 향상시킬 것 •차가운 이미지의 공장시설은 가급적 녹지를 통하여 차폐	권장 사항
기 타	•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을 준용함 (관련법이 변경 시 강화된 규정을 따른다)	

붙임 1] 건축물별 추천배색 (참조: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2010)

구 분	색채 사용범위*
공장용지 (공업지역)	• 주조: N, R, YR, Y, GY, G, BG, B, PB, P, RP / 명도5~9.5 / 채도4 이하 • 보조: N, R, YR, Y, GY, G, BG, B, PB, P, RP / 명도4~9 / 채도5 이하 • 강조: N, R, YR, Y, GY, G, BG, B, PB, P, RP / 명도4~7 / 채도5 이하 ◇ 권장 코디네이션 
지원시설용지 (준공업지역)	• 주조: N, R, YR, Y, GY, G, BG, B, PB, P, RP / 명도5~9.5 / 채도4 이하 • 보조: N, R, YR, Y, GY, G, BG, B, PB, P, RP / 명도4~9 / 채도6 이하 • 강조: N, R, YR, Y, GY, G, BG, B, PB, P, RP / 명도4~7 / 채도6 이하 ◇ 권장 코디네이션 
단독주택용지 (주거지역)	• 지붕: RP, R, YR, Y / 명도4 이하 / 채도3 이하 • 주조: 재료 고유색 권장. N, R, YR, Y, GY, G, BG, B, PB, P, RP / 명도4 이상 / 채도4 이하 • 보조: 재료 고유색 권장. N, R, YR, Y, GY, G, BG, B, PB, P, RP / 명도4 이상 / 채도4 이하 ◇ 권장 코디네이션 

※ 색채 사용범위는 Munsell표기임

붙임 2]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

구 분	단독주택용지 (근린생활시설에 한함)	지원시설용지	공장용지
수 량	• 1개 업체당 2개 이하(단 각각부에 한하여 3개 이하로 허용)		
가로형 간 판	• 형태: 입체형(권장) • 위치: 1층 이하로 제한 • 가로크기 -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• 세로크기 -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세로벽면 폭의 90% 이내로 하여 1m를 초과할 수 없음	• 형태: 입체형(권장) • 위치: 5층 이하로 제한 • 가로크기: -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• 세로크기 -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세로벽면 폭의 90% 이내로 하여 1m를 초과할 수 없음	• 형태: 입체형(권장) • 위치: 5층 이하로 제한 • 가로크기: -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• 세로크기 -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세로벽면 폭의 80% 이내로 하여 1m를 초과할 수 없음
돌출 간 판	• 위치: 2층이하 • 가로크기: - 건축물 벽면에서 0.8m 이하 • 세로크기 - 1.0m를 초과할 수 없음 •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.0m 이상	• 위치: 3층 이하 • 가로크기: - 건축물 벽면에서 0.9m이하 • 세로크기 - 2.0m를 초과할 수 없음 •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.0m 이상	• 위치: 5층 이하 • 가로크기: - 건축물 벽면에서 1.0m이하 • 세로크기 - 5.0m를 초과할 수 없음 •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.5m 이상
지주이용 간 판	• 지주이용간판 설치 불허	• 위치: 주출입구 • 가로크기: 1.0m이하 • 세로크기: 5.0m이하	• 위치: 주출입구 • 가로크기: 1.0m이하 • 세로크기: 5.0m이하
기 타	• 기타 광고물은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(2개)내에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관련법에 따라 설치 • 창문을 이용한 광고문안 및 업체명 설치와 지주이용간판, 옥상간판 설치를 금지 (단, 지원시설용지는 옥상간판을 허용) • 간판의 위치에 관하여 1층의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층으로 적용 • 건물보호 및 무질서한 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하여 건축허가시 간판부착 위치를 첨부토록 함 •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준용함		

7. 관계도서의 열람

(관계도서는 다음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)

○ 관련 도서: 『붙임』 (게재생략)

※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서 열람 가능

○ 열람 장소: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(전화 032-440-4672)

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 (전화 032-560-5772)

※ 붙임

- ① 개발계획도(토지이용계획도)
- ② 업종배치계획도
- ③ 위 치 도
- ④ 용도지역결정도
- 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
- ⑥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
- ⑦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
- ⑧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
- ⑨ 지형도면